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65
----------	-----

2024. 9. 11.(수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동우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8월 23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9월 4일

-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동우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 기능을 추가하고, 청년희망센터 수행업무를 상위법령과 통일되도록 개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.
- 또한,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년의 도정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중 “청년광장”을 “청년도정참여단”으로 개정(안 제2조)
  - 도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함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개정(안 제9조)
  -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심의기능을 추가함
  -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
- 청년희망센터 기능 강화(안 제17조)
  -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청년정책 안내, 협력체계 구축, 청년발전 또는 지원 관련 조사 업무를 신설함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제출배경

- 이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「청년기본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이 추가되었고,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음(시행 2023. 9. 22.)
-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청년희망센터의 업무수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
- 그 밖에 상위법령과 체계를 통일하여 조문 제목 및 일부 인용 법령 오류를 바로잡고, 현실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함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제5호의 “청년광장”을 “청년도정참여단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충북도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이 용어가 사용되는 안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동일하게 용어를 변경함

-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조문 제목을 법 제8조와 제9조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법 체계를 통일하였고,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여 입법의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
- 안 제9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, 시행령 제10조의 전문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  - 제2항은 시행령 제10조의 전문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·조정사항에 위원회의 범위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 항목을 신설함
  - 제3항은 청년인 위촉직 위원을 부위원장에서 공동위원장(도지사, 청년인 위촉직 위원)으로 격상한 것으로 청년의 도정참여를 확대·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,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제정 시부터 또는 개정을 통해 공동위원장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
  - 제5항은 충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민의가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함
- 안 제17조는 청년희망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의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도록 희망센터 구성·운영에서 희망센터 설치·운영으로 개정하여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함
 

또한, 법 제24조의4 신설에 따른 센터 기능에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등 3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고 판단됨
- 그 밖에 안 제18조,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에 인용된 조례 중에서 잘못 사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함
-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4년 11월 1일부터로 명시하여,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준비 여건 보장과 2024년 10월 31일에 종료되는 현 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고 타당함

- 담당 부서인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일부개정안에 대해 ‘상위법령인 「청년기본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,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와 청년희망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’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함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시행 중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·조정 기능 추가, 청년희망센터 수행업무 강화 및 상위법령 체계와 일치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- 특히, 공동위원장 운영, 도민의 대의기관이 추천한 위원 구성 등 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청년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함
- 상위 법령 위배, 규제영향분석,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집행기관과의 협의, 조례안 예고 실시 등 법률적·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“청년광장”이란”을 ““청년도정참여단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)”을 “(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”을 “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행계획을”을 “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)”를 “(청년정책조정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

제9조제3항 중 “1명과”를 “2명과”로, “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청년인”을 “도지사과 청년인 위촉직”으로, “선출한다”를 “호선하는 자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제17조의 제목 “(청년희망센터 구성·운영)”을 “(청년희망센터의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

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청년광장”을 “청년도정참여단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

3.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

2. 지역 청년단체,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

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

7.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
제18조제3항 중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“<u>청년광장</u>”이란 청년의 눈높이로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, 현장 취재, 조사·연구 및 집단토론 등을 통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단체를 말한다.</p> <p>6. (생 략)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청년도정참여단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<u>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</u>)</p> <p>① ~ ④ (생 략)</p>	<p>제6조(<u>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</u>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<u>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</u>)</p> <p>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<u>시행계획</u>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7조(<u>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</u>) ① ----- ----- <u>시행계획</u>(이하 “<u>시행계획</u>”이라 한다)을 매년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<u>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</u>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	<p>제9조(<u>청년정책조정위원회</u>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위원장 <u>1명과</u>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<u>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청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<u>도지사가 위촉하되,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⑥ ~ ⑫ (생략)</p> <p><u>제17조(청년희망센터 구성·운영)</u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청년희망센터는 다음 각 호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③ ----- <u>2명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도지사</u>와 <u>청년인 위촉직</u> --</p> <p>----- <u>호선하는</u> 자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</u></p> <p>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⑥ ~ ⑫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7조(청년희망센터의 설치·운영)</u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<u>청년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청년광장 구성·운영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4. <u>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8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제20조(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</p>	<p>-----.</p> <p>1. <u>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</u></p> <p>4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2. <u>지역 청년단체,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</u></p> <p>3. <u>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</u></p> <p>5. -----</p> <p>-- <u>청년도정참여단</u> -----</p> <p>6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7. <u>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「<u>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</u>」-----.</p> <p>제20조(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</p>

현행	개정안
<p>적·재정적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제21조(포상) 도지사는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·기관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p>	<p>적·재정적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-----.</p> <p>제21조(포상) ----- ----- -----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-----.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청년기본법

**제14조(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)**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15조(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)**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위원회(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 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1.>

④ ~ ⑥ (생략)

**제24조의2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

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·단체(이하 “청년단체등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[본조신설 2023. 3. 21.]

**제24조의4(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)**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
2. 지역 청년단체,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
3.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
5.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~ ⑥ (생략)

[본조신설 2023. 3. 21.]

## □ 청년기본법 시행령

**제10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)**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
2. 제20조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

[전문개정 2023. 9. 12.]

**제20조(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)**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“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·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 <개정 2023. 9. 12.>

1.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
2. 외교·국방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
3. 인사·감사·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
4.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·성격·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

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23. 9. 12.>

1. 조정위원회
2.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
3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
4.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
  - 가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
  - 나. 시·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

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신설 2023. 9. 12.>

1.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: 10분의 3 이상
2.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: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·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
3. 그 밖의 위원회: 10분의 1 이상

④ (생략)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, 위원회의 구성 정비를 통한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 및 청년희망센터 수행업무의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강화를 위한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,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제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.